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 특별시장

고요한택시
GOYOHAN TAXI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30676	가맹본부 홈페이지 주소	https://www.goyohantaxi.com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3.05.12	대표 이메일	contact@goyohantaxi.com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12.20	주소	anmobility.com

[고요한택시(Goyohan Taxi)]

정 보 공 개 서

코엑터스(주)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코엑터스(주)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성수동2가), 성수역 SK V1 타워 812호 코엑터스(주)
대표번호(가맹사업부 동일) Tel. 070-7114-0418 Fax. 070-7966-2350

<https://www.goyohantaxi.com>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별첨 서류

※ 당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는 정확한 내용 및 별첨 서류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는 당사의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내용의 일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코엑터스 (주)	고요한택시 (Goyohan Taxi)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성수역 SK V1 타워 812호(성수동2가)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8.04.18	2018.04.18	송민표	070-7114-0418	070-7966-2350
	법인등록번호	110111-6724573	사업자등록번호	592-86-00949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송민표	고요한택시 (Goyohan Taxi)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성수역 SK V1 타워 812호(성수동2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송민표	070-7114-0418	070-7966-2350
사내이사	노정빈	고요한택시 (Goyohan Taxi)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성수역 SK V1 타워 812호(성수동2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송민표	070-7114-0418	070-7966-2350
기타비상무이사	김정태	고요한택시 (Goyohan Taxi)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성수역 SK V1 타워 812호(성수동2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송민표	070-7114-0418	070-7966-2350
기타비상무이사	이종현	고요한택시 (Goyohan Taxi)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성수역 SK V1 타워 812호(성수동2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송민표	070-7114-0418	070-7966-2350
감사	한전규	고요한택시 (Goyohan Taxi)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성수역 SK V1 타워 812호(성수동2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송민표	070-7114-0418	070-7966-2350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가맹사업 관련 사업 양도·양수 포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분	내용	추가 설명
명칭	고요한택시(Goyohan Taxi)	택시 호출 서비스
상호	고요한택시 OO점	-
상표(서비스표)	고요한택시 GOYOHAN TAXI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 40-1454069호
그 밖의 영업표지	고요한택시(Goyohan Taxi)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725,326	569,005	1,156,321	431,531	-663,512	-635,092
2022년	2,014,805	569,192	1,445,613	1,071,947	-1,338,286	-1,210,766
2023년	1,593,973	1,135,121	458,851	1,629,174	-1,543,366	-1,435,643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송민표	2018.4. ~ 현재	코엑터스(주) 대표이사	경영 총괄
	노정빈	2018.4. ~ 현재	코엑터스(주) 사내이사	관리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김정태	2021.6. ~ 현재	코엑터스(주) 기타비상무이사	-
	이종현	2021.6. ~ 현재	코엑터스(주) 기타비상무이사	-
	한전규	2018.4. ~ 현재	코엑터스(주) 감사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3	52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일자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고요한택시 GOYOHAN TAXI	가맹점 운영	2019.03.06.	제40-1454069호	코엑터스(주)	2029.03.06.
권리 범위	간판 및 사인물 등의 영업표지로 사용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고요한택시(Goyohan Taxi)]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가맹사업 시작 예정(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2. 해당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코엑터스(주)	고요한택시 (Goyohan Taxi)	송민표	가맹사업 시작 예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성수역 SK V1 타워 812호(성수동2가)

3. [고요한택시(Goyohan Taxi)] 업종

영업표지	업종	
	고요한택시 (Goyohan Taxi)	대분류
	운송	택시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고요한택시(Goyohan Taxi)]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당사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	-	-	-	-	-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 당사는 가맹사업 시작 예정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바로 전 3년간 [고요한택시(Goyohan Taxi)] 가맹점 수

당사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	-	-	-	-	-
2022	-	-	-	-	-	-
2023	-	-	-	-	-	-

* 당사는 가맹사업 시작 예정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 [고요한택시(Goyohan Taxi)]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 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고요한택시(Goyohan Taxi)] 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당사는 가맹사업 시작 예정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 천원, VAT 미포함)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전체	-	-	-	-	-	-	-
서울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	-	-	-	-	-	-	-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8. [고요한택시(Goyohan Taxi)]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고요한택시(Goyohan Taxi)]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	-

* 당사는 가맹사업 시작 예정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전국	(유)지원모빌리티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20, A동 444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조현익	-	예정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3. 06. 30 ~ 2028. 06. 29	○	○	X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고요한택시(Goyohan Taxi)]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예치기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대경빌딩)	02-2151-5050

▶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위 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 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 후 “예치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당사의 이름을 찾아 입금하시면 됩니다.

▶ 귀하는 또한 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상기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내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고요한택시(Goyohan Taxi)]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가맹점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가맹점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미예치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0	-	-	-	-
가맹비	0	-	-	-	-
교육비	0	-	-	-	-

2) 보증금액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0	-	-	-
보증금	0	-	-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당사는 귀하로부터 최초 가맹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초도물품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미정)	400	-	영업시작 전	미설치 시	- 차량 내/외부 설비, 드라이버 유니폼 등
차량래핑	협력업체 (미정)	200	-	영업시작 전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공급 이후에는 반환 불가	
총계	-	600				택시 1대 기준

- ①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② 상기 지급기간 및 물품대금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총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이율 10%의 지연이자 가산됩니다.
- ③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 구매, 유지하여야 합니다.
- ④ 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자동차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⑤ 위 표 항목은 귀하가 직접 설치/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품목 일부를 직접 설치/구매할 경우 계약체결 시 당사와 별도로 협의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여객자동차플랫폼가맹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정부 및 지자체 기준을 따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택시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춘 자 또는 운송사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가맹사업의 가맹점사업자 또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함
종업원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고요한택시(Goyohan Taxi)]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아래 표에 기재된 물품내역 이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당사는 가맹금, 비용 등에 대하여 분납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VAT 별도)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광고·판촉비 분담금	가맹본부	V-9 참조	광고 실시 전	반환 안됨	-	-
은행표준습득교육	가맹본부 및 협력업체 (미지정)	275,000	교육실시 전	실시 전	실시 후	*기본교육 (드라이버 1인당)
영업 중	가맹본부 및	설비	교육실시 전	실시 전	실시 후	*정기교육

교육	협력업체 (미지정)					*특별교육 (드라이버 1인당)
로열티	가맹본부		익월 10일			후불
가맹점 FMS(Fleet Management System) 이용료	가맹본부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는 운임 합계의 40%	익월 10일	반환불가	-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협력업체		익월 10일			
전용단말기 월사용료 (통신비)	가맹본부 및 협력업체 (미지정)	5,000원	매월 지정일	가맹본부 귀책으로 인한 해지	사용 후	후불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대금 지급기한 경과 시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비용	협력업체 (미정)	협의	협의	실시 전	실시 후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후 결정

①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② 상기 지급기간 및 물품대금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총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이율 1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는 2023년 개점한 가맹점이 없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①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해 필요 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 관리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매출/회계처리 관련 등)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가맹점 또는 차량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의 탈퇴를 원할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고요한택시(Goyohan Taxi)]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 운영권 이전계약을 체결하며 이때 양도인의 잔존계약기간을 포함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게 되고 가맹비를 제외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때 가맹비를 포함한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①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고요한택시(Goyohan Taxi)] 가맹의 어떠한 영업표지, 식별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철거에 필요한 금액은 귀하가 지불하여야 합니다. 만약, 당사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당사가 철거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② 귀하는 가맹점 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매뉴얼 등)를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고요한택시(Goyohan Taxi)]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는 홈페이지, 개별공지 등을 통하여 변경사항을 안내하며, 자세한 내역은 계약체결 시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는 2023년 개점한 가맹점이 없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고요한택시(Goyohan Taxi)]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고요한택시(Goyohan Taxi)]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고요한택시(Goyohan Taxi)]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3. 서비스,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서비스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서비스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서비스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택시 운송서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개별 공지에 따름)	브랜드의 동일성 및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하여 왼쪽에 기재된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서비스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서비스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브랜드 동일성을 유지 및 신뢰도를 위하여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일체를 경쟁업체 또는 타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하여서 아니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타 가맹점사업자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일체	거래상대방에게 좌측 기재 상품·용역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서비스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운송서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각 지자체에 협의된 가격으로 진행	홈페이지, 유선, 이메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할 지자체(행정관청) 협의에 의해 요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서비스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 17에 의거 『가맹사업법』 제 12조의 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개설된 가맹점사업자의 사업구역으로 지정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의 영업지역 재조정에 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가

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이 행정관청에 의해 조정될 경우 당사와 합의하에 영업지역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 17에 의거 『가맹사업법』 제 12조의 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 17에 의거 『가맹사업법』 제 12조의 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상품 또는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 사업형태가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	-	-	-

현재 당사는 가맹사업 시작 예정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	-

현재 당사는 가맹사업 시작 예정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 ① [고요한택시(Goyohan Taxi)]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입니다.
- ② 갱신계약 시 갱신계약기간은 [2년]씩 연장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D-60일 이전

예→E, 아니오→A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26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영업설비 및 집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법령 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가맹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 동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 수준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1) 일반적인 해지 사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계약서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26조 1항
2. 다른 가맹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26조 1항
3.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영업설비 및 집기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26조 1항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법령 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26조 1항
5. 가맹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26조 1항
6.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26조 1항
7. 동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 수준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26조 1항
8. 가맹계약의 의무 조항 또는 특약 조항 위반 시	

(2) 즉시 해지 사유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27조 2항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제27조 2항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관련법령의 제·개정, 정부 정책의 변경 또는 법원의 명령 등으로 “본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제27조 2항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27조 2항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	제27조 2항

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 2항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27조 2항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경우	제27조 2항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27조 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법 제정 및 개정에 따라 본 계약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을 수정합니다.	제31조 3항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양도,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양도 3개월 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서비스운영팀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을 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운영권 이전계약을 체결하며 이때 양도인은 잔존계약기간을 포함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게 되고 가맹비를 제외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고 가맹비를 포함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본부에 서면통보 -> 본부 승인 -> 교육 수수료	교육수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본부가 승인한 권리의무	가맹본부에 서면통보 -> 본부 승인 -> 교육 수수료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본부가	가맹본부에 서면통보 -> 본부	

	승인한 권리의무	승인 -> 교육 수수료	
--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귀하가 계약기간 존속 중 및 계약종료, 해지, 해제 후 1년 동안 [고요한택시 (Goyohan Taxi)]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고요한택시(Goyohan Taxi)]와 동일한 업종 (가맹운수업 콜택시 및 택시서비스 업종 및 이와 관련된 가맹사업 등)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당사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서비스 운영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고요한택시(Goyohan Taxi)]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자율	자율	문의: 서비스 운영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고요한택시(Goyohan Taxi)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 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이미지 광고, 상품광고	전액 부담	-	분담없음	
	상품광고+가 맹점모집광고	전액 부담	-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		
판촉행사	할인행사	전액 부담	-	분담없음	
	증정행사	전액 부담	-		
	팸플렛 등 제작	전액 부담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촉 활동 등을 위한 판촉물제작, 인쇄물제작 등 홍보물, 홍보소모품,

경품 등을 제작 시에는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①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설비 및 집기 등에 대한 지원을 받았을 경우, 지원받은 영업설비 및 집기 등의 장착이 완료된 날로부터 해당 가맹차량의 가맹서비스 최초 운행일로부터 1년까지의 기간 이내에 당사의 귀책사유 없이 일방적인 해지의사를 밝힌 경우 귀하는 지원 받은 내역에 상응하는 총 금액의 최대 1.5배를 당사에 지급한다.

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17조를 위반하여 당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노하우를 누설 및 유출할 경우, 위약별로 가맹본부에게 금 삼천만원 (30,000,000원)을 지급한다.

- ⑦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후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위약별로 1일(10만원)씩 가맹본부에 지불한다.
- ⑧ 가맹점사업자의 임의로 또는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게 아래와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의 위약벌을 지급한다.
 - * 남은 잔여 계약 개월수 X 20만원
- ⑨ 가맹본부의 지급요청일에 귀하가 지체배상금 및 위약벌을 지체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기타 계약서 및 견적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대금에 대한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당사에게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귀하는 연 이율(1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⑩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 어느 일방이 계약체결 후 영업개시 전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상대방에게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실 손해금을 지급한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택시 1대 기준, VAT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14일 내외	13p~15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 방문, 홈페이지 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및 검토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계약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체결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 계약 14일 전 제공		
가맹계약 체결	- 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보관, 일정협의	D-14	
기자재·비품설치	- 기기 및 소품 설치	1일	
교육 실시	- 드라이버 교육 실시	1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사유의 예

- 사업자등록증 및 각종 인허가 사항 등이 늦어질 시
- 가맹점희망자/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협의 시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고요한택시(Goyohan Taxi)] 가맹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상 당사는 귀하에게 가맹점환경개선에 대한 비용지원의 의무는 없으나, 당사는 귀하와 협의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고요한택시(Goyohan Taxi)]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개점 전)	서비스 제공방법 개점 전에 필요한 제반교육	실습 교육 (지정 교육장)	개점 1일 전	개점 전 실시
기본교육	드라이버 교육 (서비스 마인드, 앱 사용방법 , 안전 교육 등)	이론, 실습교육 (오프라인)	운행개시 1일 전	개점 후 실시
정기교육	드라이버 서비스 향상교육 (고객 친절사례 중심)	이론, 실습교육 (온/오프라인 병행)	필요시 (실시 1개월 전 공지)	개점 후 실시
특별교육	정책사항 변경에 따른 교육	이론, 실습교육 (온/오프라인 병행)	필요시 (실시 1개월 전 공지)	개점 후 실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고요한택시(Goyohan Taxi)]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원, VAT 포함)	비고
신규교육 (개점 전)	-	-	없음
기본교육	협의	100,000원	드라이버 필수
정기교육	협의	실비	드라이버 필수
특별교육	협의	실비	필요시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와 운수종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서비스운영팀(tel: 070-7114-0418)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 1 >

<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

※ 귀하가 장래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가맹점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 첨부 2 >

< 수령확인서 - 가맹희망자 보관용 >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 수령확인서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가맹본부 상호	
제공 담당자	(인)
※ 담당자 주의사항: 반드시 자필로 작성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성명		연락처	
주소			
제공장소		제공일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사실	<u>“상기 본인은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u> [하단 자필기재 必]		

※상기 기재사항들은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만 유효합니다.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을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맹 본 부 : 코엑터스(주) (인)

정보공개서 수령자 : (인)

< 수령확인서 - 가맹본부용 >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 수령확인서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가맹본부 상호	
제공 담당자	(인)
※ 담당자 주의사항: 반드시 자필로 작성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성명		연락처	
주소			
제공장소		제공일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사실	<p style="text-align: center;">“상기 본인은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하단 자필기재 必]</p>		

※상기 기재사항들은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만 유효합니다.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을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맹 본 부 : 코엑터스(주) (인)

정보공개서 수령자 : (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